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3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나74092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337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2. C

변론종결 2023. 1. 12.

판결선고 2023. 2. 2.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32,115,7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2022.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그 중 16,057,89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15,7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8. 14.부터 2016. 8. 1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피고 C은 같은 기간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로부터 2014. 2. 5.부터 2015. 1. 12.까지 급여 내지 퇴직금(이하 '급여 등'이라 한다) 명목으로 합계 32,115,78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회사의 정관 제38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내이사인 피고 C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115,78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피고 C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위 급여 등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급여 등 합계 32,115,78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2. 1.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한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사내이사인 피고 C이 지급받은 급여 등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원고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내이사인 피고 C에게 위 급여 등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관한 원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피고 C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2,115,780원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 32,115,78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피고 C의 위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원고의 주주명부에 피고들과 E, F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피고 C와 F 명의의 주식은 소외 G이 신탁한 것이고 위 G와 E이 피고 B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함께 근무하면서 수시로 협의하여 피고 C의 급여 등을 결정하고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 D 급여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B는 또한, 피고 C에게 지급된 급여 등은 피고 C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104048, 2011다104055(공동소송참가)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 B의 임무위반행위 내용, 피고 C이 실제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 B가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에게 위 급여 등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피고 B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책임을 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16,057,890원(= 32,115,78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급여 등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C은 부당이득반환으로 32,115,7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2022.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손해배상으로 피고 C과 공동하여 그 중 16,057,89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룡